

의안번호	제 106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
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4년 12월 16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4년 12월 16일
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이유

- 충북도의 대표적 기업지원기관으로의 사업확대와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기관 명칭 변경
- 법인 명칭에 대하여 주문관청인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정관 변경허가를 받아 이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조례명 변경
 -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
 -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조례
- 법인명칭 변경(안 제1조, 제3조)
 -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→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
- 사업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(안 제3조)
 - 사업 위탁기관 : 지경부장관, 중기청장, 충청북도지사
 - 정부, 지자체,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단체
- 약칭 변경 : 지원센터 → 진흥원(안 제3조부터 제8조)
- 기관장 명칭 변경 : 본부장 → 원장(안 제8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7. 입법예고 : 생략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”를 “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”를 “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는”을 “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 중 “지식경제부장관, 중소기업청장, 충청북도지사”를 “정부, 지방자치단체,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단체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0호 중 “지원센터”는 “진흥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원센터는”을 “진흥원은”으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원센터”를 “진흥원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지원센터”를 각각 “진흥원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지원센터”를 각각 “진흥원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지원센터”를 “진흥원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지원센터”를 “진흥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원센터 본부장”을 “진흥원 원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5호 중 “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”를 “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”으로 한다.

② 「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9호 중 “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(이하 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”라 한다)”를 “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(이하 “기업진흥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제5조제4호, 제6조제1항제8호 및 제9조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”를 각각 “기업진흥원”으로 한다.

③ 「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”를 “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”으로 한다.

④ 「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4호라목 중 “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”를 “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”으로 한다.

⑤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」 별표의 일자리창출과 위탁대상기관란 중 “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”를 “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한 <u>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</u>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사업) ① <u>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</u>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9. <u>지식경제부장관, 중소기업청장, 충청북도지사</u>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</p> <p>10. 그 밖에 <u>지원센터</u>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</p> <p>② <u>지원센터</u>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은 정관으로 정한다.</p> <p>제4조(기본재산의 조성) <u>지원센터</u>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제5조(재정지원 및 공유재산의 대부)</p> <p>① <u>충청북도지사</u>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<u>지원센터</u>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수 있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<u>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</u>----- -----.</p> <p>제3조(사업) ① <u>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</u>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은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<u>정부, 지방자치단체,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단체</u>가 ----- -----</p> <p>10. ----- <u>진흥원</u> ----- -----</p> <p>② <u>진흥원</u>은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4조(기본재산의 조성) <u>진흥원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5조(재정지원 및 공유재산의 대부)</p> <p>① ----- ----- <u>진흥원</u> ----- ----- -----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② 도지사는 <u>지원센터</u>의 설립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 재산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.</p>	<p>② ----- <u>진흥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6조(업무의 위탁) ① 도지사는 <u>지원센터</u>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<u>지원센터</u>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6조(업무의 위탁) ① -----<u>진흥원</u> ----- ----- -----<u>진흥원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위탁) 도지사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및 종합 지원체제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<u>지원센터</u>에 위탁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위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진흥원</u> -----.</p>
<p>제8조(보고 및 검사)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<u>지원센터</u>의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업무·회계·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(보고 및 검사) ① ----- ----- <u>진흥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② (생략)</p> <p>③ 도지사와 <u>지원센터</u>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운영 및 집행 상황 등을 충청북도의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u>진흥원</u> <u>원장</u> ----- ----- -----.</p>

관계법령 발취

□ 민법

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제40조(사단법인의 정관)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
제43조(재단법인의 정관)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 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제45조(재단법인의 정관변경)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.

③ 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.

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

제4조(설립허가) ①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.

3.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

제6조(정관 변경허가의 신청 등) ② 주무관청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,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□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

제49조(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)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□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63조(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지원) ①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(이하 “종합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각종 산업·금융·경영·산업기술·무역 정보 등의 제공
2. 종합기술지도 및 연수 실시
3.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
4.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
5.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센터 운영
6. 그 밖에 시·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

② 시·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중소기업청장 및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 및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중소기업청장 및 시·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